



외국환거래법 현황과 개편 필요성

2022. 7. 5

자본시장연구원
선임연구위원 이승호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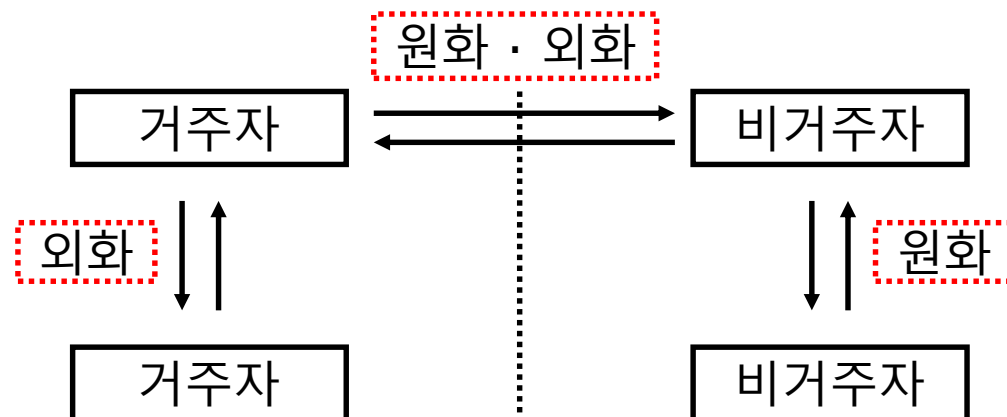
1 외국환거래법 현황 및 평가

2 법 제정 이후 거시경제환경 변화

3 개편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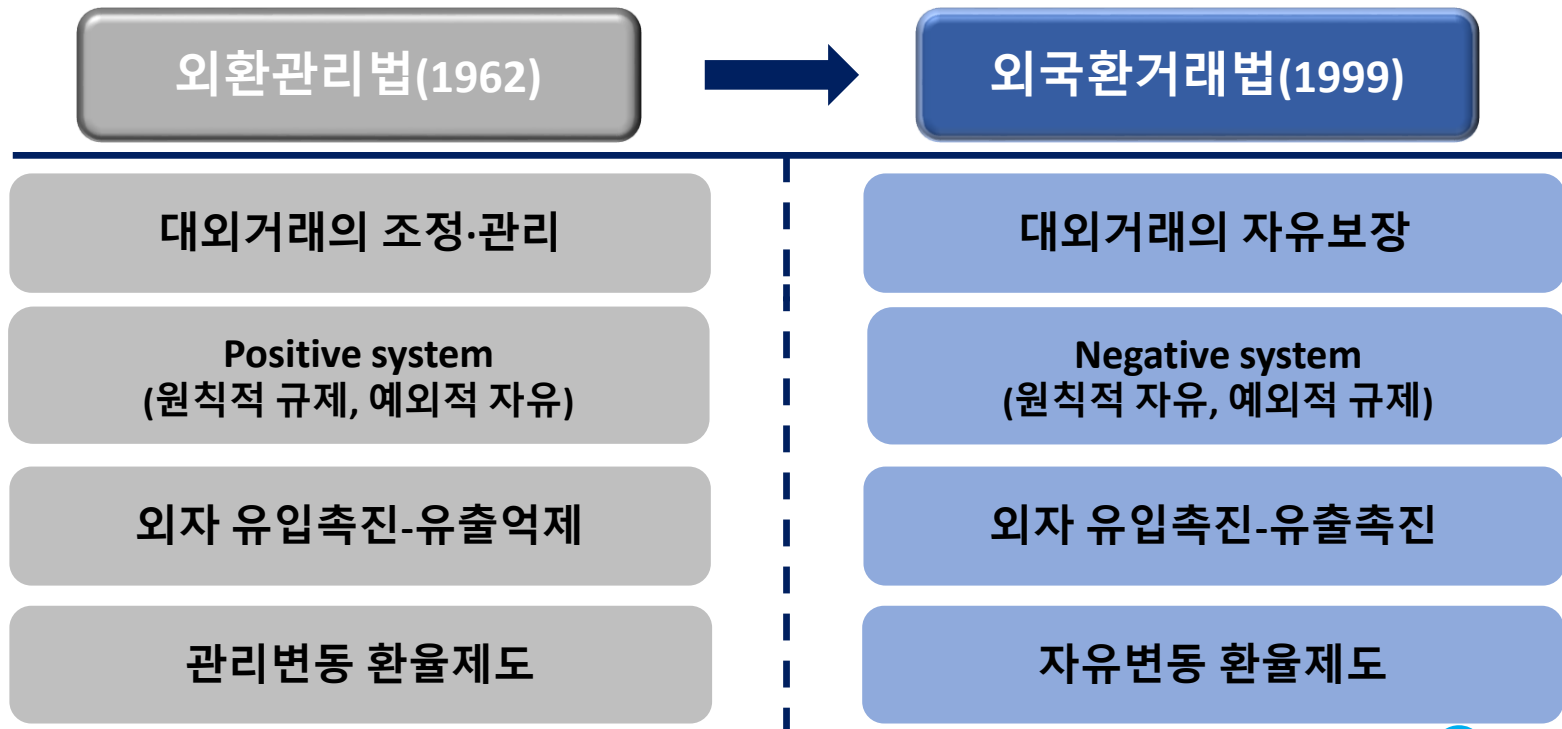
외국환거래법 개관

- 외국환거래법은 우리나라의 모든 대외거래 및 외환거래를 총괄하는 법으로 외환 위기 직후 제정·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법의 근간이 유지
- 법의 목적 : “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”(법 제1조)
- 적용범위 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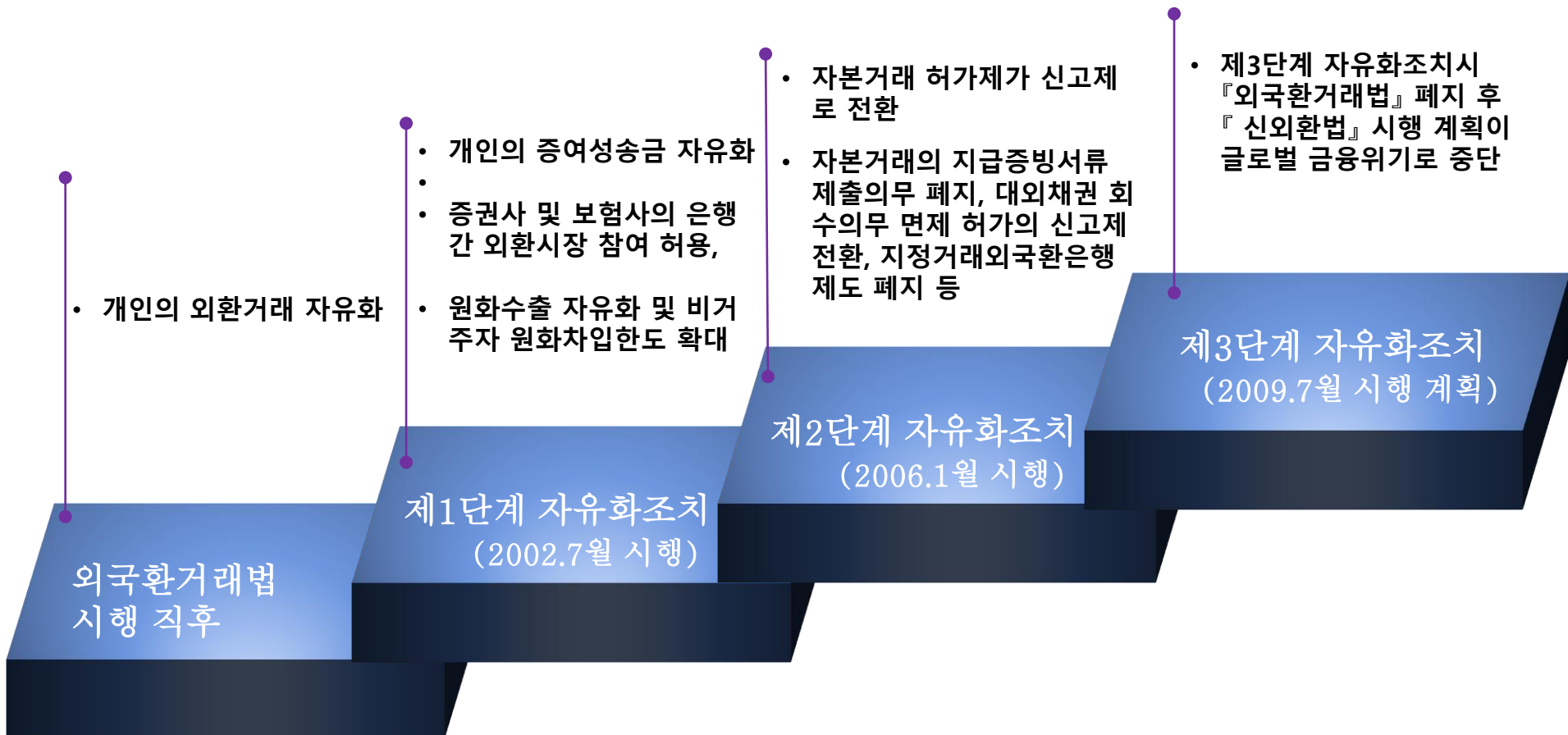
도입취지 및 실제 운용

- 종전의 외환관리법과 달리 원칙적 자유, 예외적 규제(negative system) 표방
 - ▶ 자유변동환율제 하에서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외자의 유입 및 유출 촉진을 지향
- 그러나 암묵적으로 외자유출 억제제를 위해 거래시 사전신고나 지급시 절차적 규제,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제한 등 실제에 있어 조정·관리 방식으로 운영
 - ▶ 법령체계상으로도 예외사항의 열거주의, 복잡성, 타법과의 이중규제 등 정합성이 결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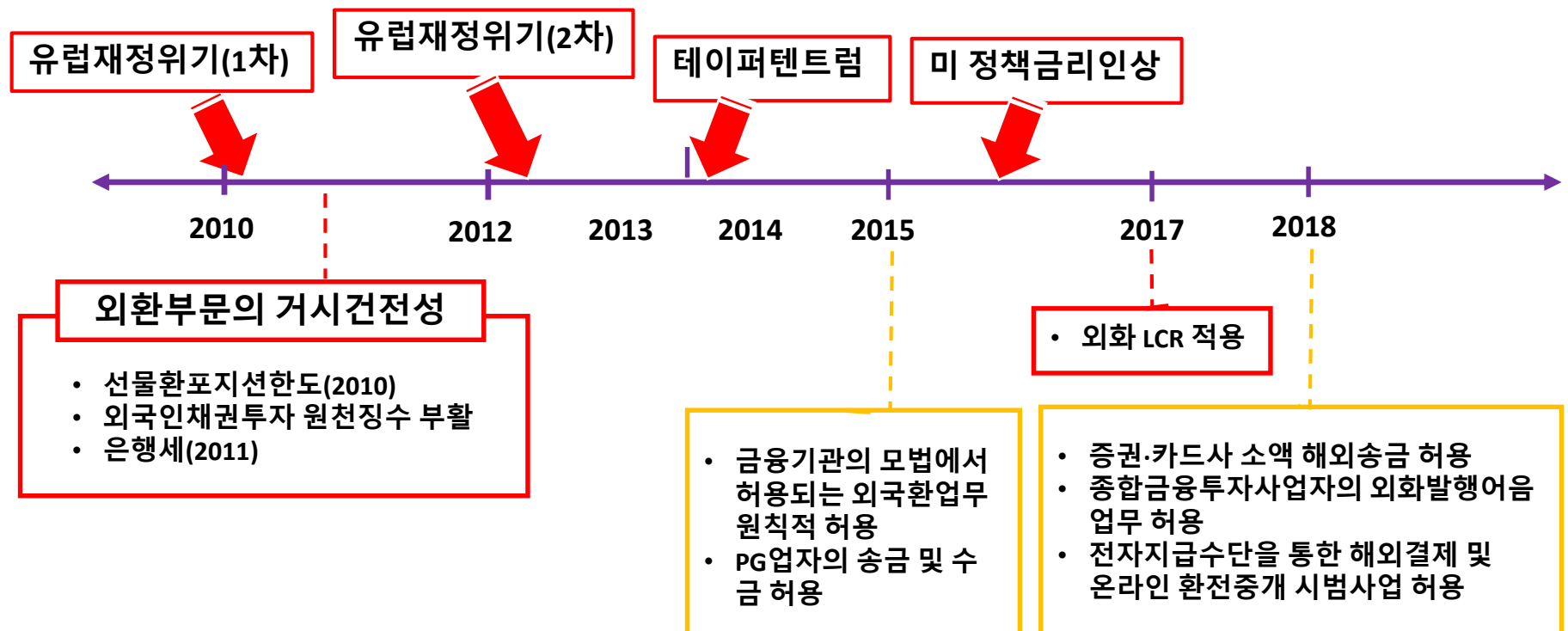
변천과정(1) :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

- 외국환거래법은 제정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부분적인 자유화가 진행
 - ▶ 제1차 및 제2차 외환자유화 조치 시행
 - ▶ '신외환법'의 시행 계획(2009년)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단



변천과정(2) :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유럽재정위기, 美 테이퍼텐트럼 등 대외불확실성 지속으로 주로 거시건전성 위주의 정책들이 도입되고,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진행
 - ▶ 선물환포지션한도, 은행세, 외화LCR 도입으로 대외부문 취약성 극복과 안정에 기여
 - ▶ 최근에는 금융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PG업자의 송·수금 허용('15년), 소액 해외송금업·온라인환전업('18년) 신설 등 '핀테크'를 외환법령의 영역에 포함



법의 주요 특징

자본거래 신고제

- ◆ 경상거래와 달리 자본거래는 대부분 사전에 외환 당국이나 은행에 신고토록 하고 지급 시에도 절차적 규제를 부과
 - 2006년 1월 자본거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
 - 단순신고가 아닌 신고수리제의 성격
 - 이후 수차례 신고제 폐지 또는 완화 논의가 있었으나 대외건전성 관리 및 모니터링 목적을 위해 현재까지 유지

지급·수령시 절차적 규제

- ◆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방식으로 대외지급을 하여야 함
 - 이때 외국환은행은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받아 당해 지급이 법령에 의한 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
 -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확인, 세관 신고 등 필요

외국환업무취급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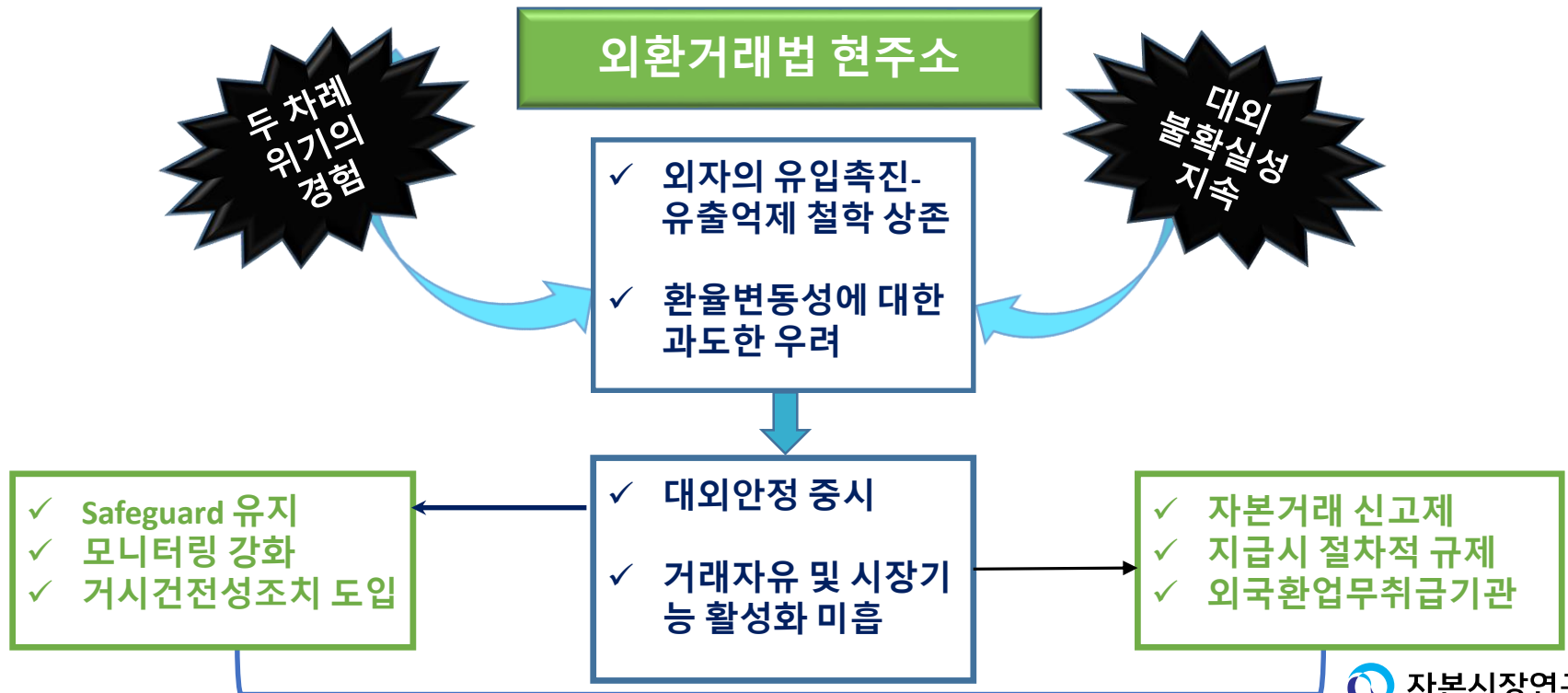
- ◆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에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기관별로 모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외국환업무를 허용
 - 외국환은행은 모든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고객의 거래 또는 지급 등에 대해 확인 의무
 -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모법에서 정한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의 취급이 가능하나 실제에 있어 제약이 상존

유사시 안전장치 및 모니터링

- ◆ 천재지변, 전시·사변, 국내외 경제사정의 증대하고도 급격한 변동,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시 비상조치권(safeguard)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(법 제6조) 아직까지 발동된 예는 없음
 - 대외거래의 일시 정지, 외환집중, 대외채권회수, 자본거래 허가제, 가변예치의무제 등
- ◆ 외환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
 - 외환전산망 운영 관련 한국은행을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

법 운영의 현주소

- 두 차례 위기의 영향과 지속적인 대외불확실성 등으로 법의 실제 운영시 외자유출억제의 철학이 상존하고 환율변동성 완화 등 대외부문의 안정 달성에 치중
 - ▶ 그 결과 위기대응력과 대외건전성이 확충되며 대외안정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
- 반면 법에 명시된 거래자유화 및 시장기능 활성화 목적 달성은 다소 미흡
 - ▶ 대외거래에 대한 관리 및 조정을 위한 조치들이 유지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의 불편 및 비효율성에 비해 대외건전성 유지에 큰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



목 차

1 외국환거래법 현황 및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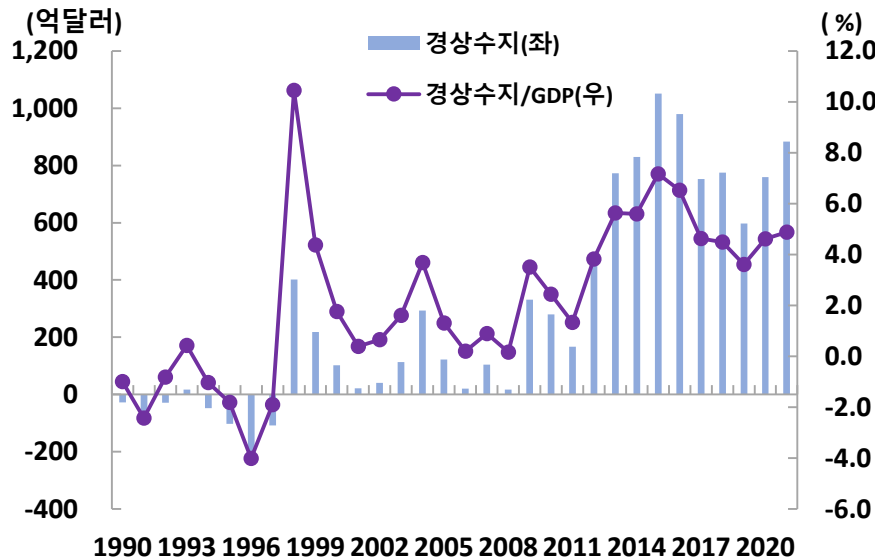
2 법 제정 이후 거시경제환경 변화

3 개편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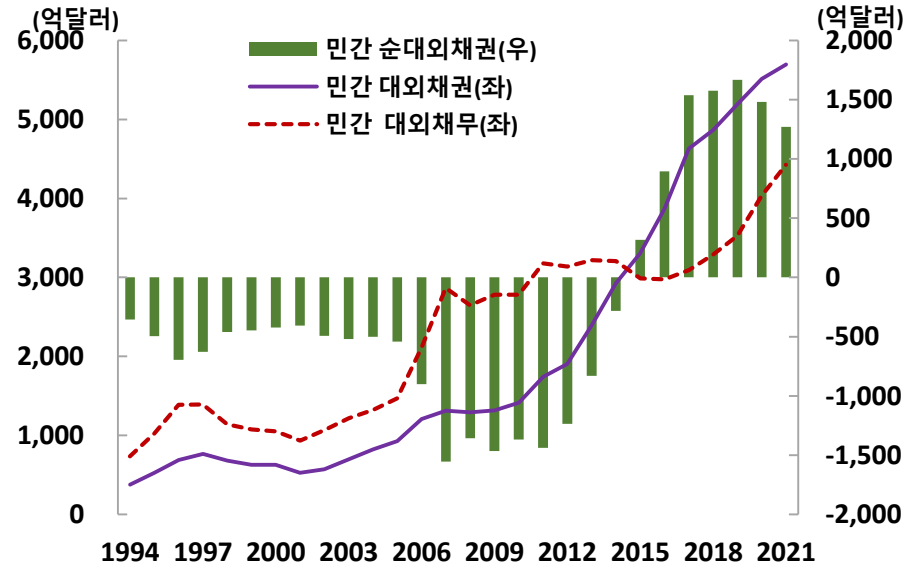
(1) 외환부족국에서 순대외채권국으로 이행

- 외국환거래법의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외환거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미 외환부족을 넘어서서 자본수출국으로 이행
 - 2000년대 이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기초가 정착
 - 2015년 이후 민간부문이 순대외채권국으로 이행하며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둔화
- ▶▶ 외자유출 억제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법 운영과 관행을 탈피할 필요

경상수지



대외채권 및 채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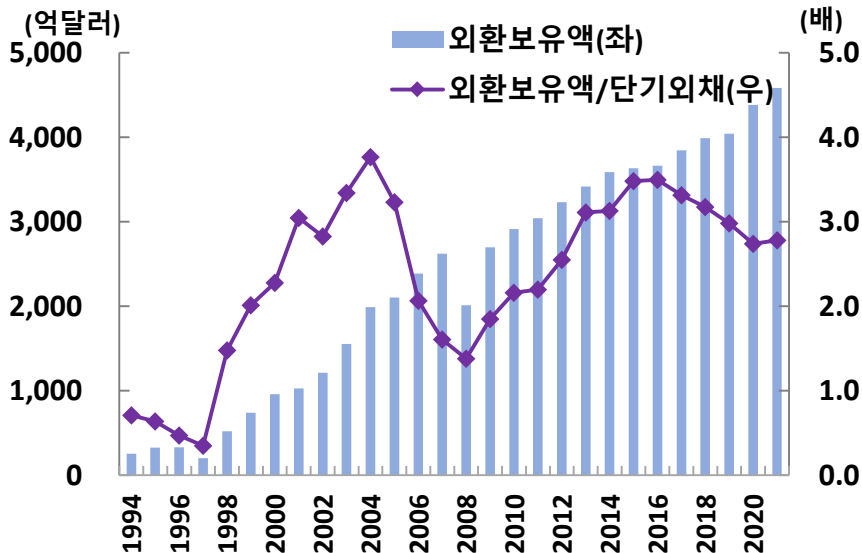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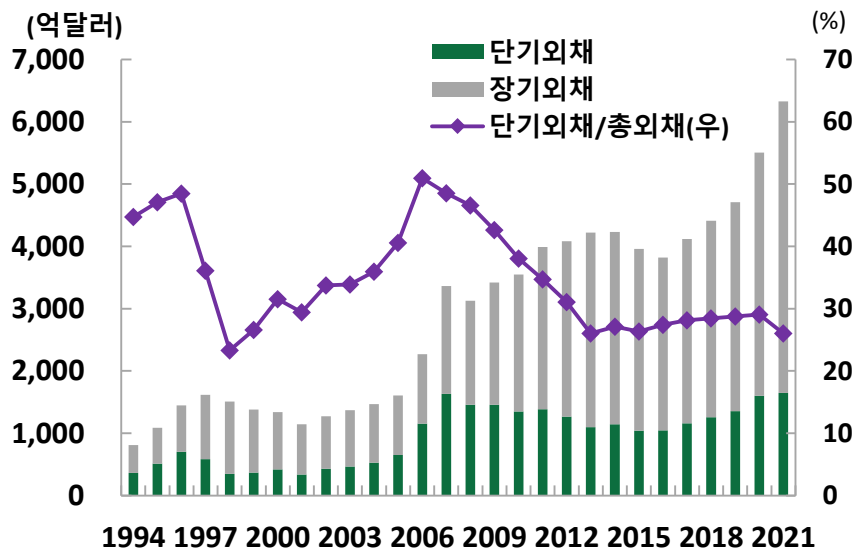
(2) 위기대응역량 대폭 확충

- 거시건전성정책 등에 힘입어 대외충격에 대한 위기대응 역량도 큰 폭 확충
 - › 풍부한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의 3배 수준
 - › 단기외채비중도 30% 이하 수준을 유지하며 외채구조 개선
 - 최근과 같은 글로벌 통화정책 급변 상황에서도 외환부문의 상대적인 안정세 유지
 - › 안정적인 원화환율변동, 양호한 대외차입여건, 건전한 외채구조, 대외신인도 유지 등
- ▶▶ 환율변동성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갖기보다 시장기능 활성화 노력 필요

외환보유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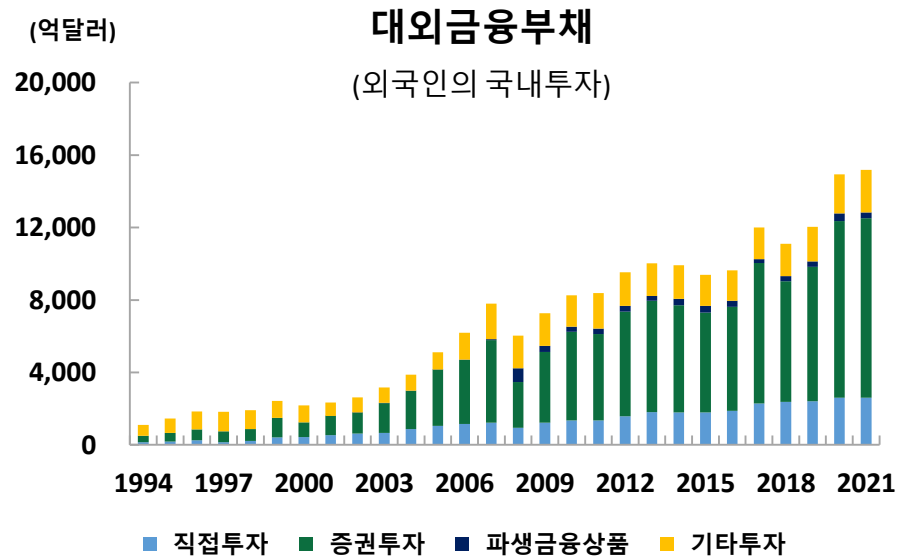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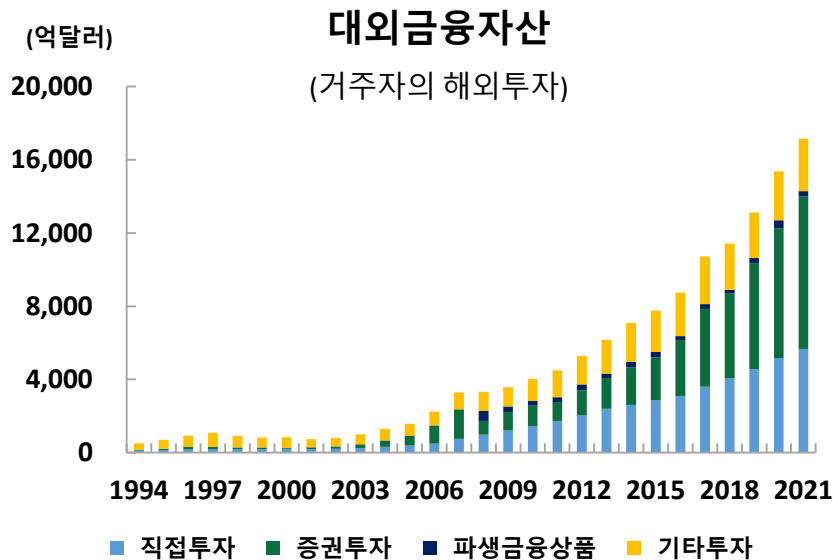


외채



(3) 해외투자 및 비은행기관의 중요성 증가

- 전세계적으로 자본거래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외금융투자가 급증
 - ›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금융부채는 6배 증가한 반면 대외금융자산은 21배 증가
 - › 잠재성장률 저하, 인고고령화에 따른 투자수익률 제고 필요성 등 거시경제환경 변화를 반영
 - 해외금융투자 증가로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증가
 - › 국제외환거래에서 은행-비은행기관간(연기금 포함) 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
- ▶▶ 대외금융자산 축적을 통한 국민가처분소득 창출 필요가 커지면서 외국환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법 관리체계(외국환은행중심주의)의 한계도 증가



자료: 국제투자대조표(IIP), 한국은행

(4) 새로운 대외지급 수단 및 방법의 출현

- 전통적인 대외지급수단 외에 최근 가상자산이나 간편결제서비스 등 새로운 지급 수단*과 방법이 등장하며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
 - *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 정의하는 외국환에는 대외지급수단(외국통화), 외화증권, 외화파생상품, 외화채권 등이 포함
 - ›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의 성격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으며 가상자산 매매목적의 송·수금을 제한하고 있음
 - › 일부 외국계회사는 온라인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실상의 선불전자지급, PG업, 소액송금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未등록상태로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에서 배제
 - › 향후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(CBDC)가 국가간 결제에 활용될 경우 외국환거래법과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
- ▶▶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화로 새로운 대외지급 수단 및 방법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외국환거래법이 이에 대한 새로운 규율방법을 모색해 나갈 필요

목 차

1 외국환거래법 현황 및 평가

2 법 제정 이후 거시경제환경 변화

3 개편 필요성

(1) 국민불편 해소 및 거래자유 보장

- 그간 거시경제환경 변화에도 법의 근간을 유지한 채 부분 개편을 거듭한 결과 법령 체계가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금융관련법과의 정합성이 저해
 - ▶ 일반 국민의 부지에 의한 법령위반이 유발
 - ▶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법조문의 이해와 이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
- 특히 각종 자본거래나 대외지급시 사전신고제나 사후보고 의무 등으로 거래의 편의성과 자율성이 크게 저해
 - ▶ 자본거래의 경우 거래유형별로 거래규모, 상대방, 외환유출여부 등에 따라 신고대상 여부 및 신고주체, 접수기관이 상이
 - ▶ 신고예외 사항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기관이 신고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
 - ▶ 대외건전성이나 모니터링 목적 이외의 실효성이 낮은 신고사항도 상존
 - 예: 해외직접투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사후보고 등
- ▶▶ 법령체계 정비, 각종 사전신고제 재검토 등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거래의 자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

(2) 금융산업 외환경쟁력의 균형적 발전

- 현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업권간 허용업무에 대한 불평등 문제와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외환경쟁력이 저하
 - › 은행의 경우 모든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거래 확인 및 보고 등 과도한 위임사무를 부담
 - ›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업무범위에 제약이 있고 그 결과 외환업무경험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위기대응력도 미흡
 - 코로나19 직후 글로벌 주가하락시 국내 증권사의 ELS 마진콜 발생과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원화환율이 급등한 경험은 비은행기관의 외환부문 취약성이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한 대표적 사례
 - › 소액송금 등 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경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접근한 결과 최소한의 모니터링 체계도 미흡하고 업권간 불평등을 심화하는 문제점
- ▶▶ 기관별 외국환업무의 허용범위 및 규율체계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외환경쟁력을 강화할 필요

(3)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대외건전성 유지

- 대외불확실성에 대비한 금융안정 유지는 법의 기본 역할인 만큼 대외건전성 유지를 법의 목적에 명시
 - › 이를 위해 사전신고와 같은 종전의 관리위주 방식에서 탈피하되,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
 - › 아울러 거시건전성정책들은 새로운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필요시 조정
- 아울러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규정을 내실 있게 정비
 - › 평상시와 위기시를 구분하여 대응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외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
- ▶▶ 거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대외 불확실성으로부터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

(4) 개방경제하의 경제활력 제고

- '신외환법'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을 저하,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 확보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토록 할 필요
 - ▶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자의 안정적인 자금(in-bound) 확보와 더불어 거주자의 해외금융투자(out-bound)를 통한 국민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양 방향 자금흐름을 함께 중시
- 외국인의 안정적인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외환거래 관련 제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외신인도를 유지
 - ▶ 자본 및 외환시장 하부구조 선진화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시장 매력도를 견인
 - ▶ 이러한 노력을 통해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및 금융선진화를 촉진
- 거주자의 해외금융투자 확대에 부응한 법체계 정비로 해외소득을 적극 창출
 - ▶ 해외투자에 따른 편의성 및 수익률 제고, 리스크 관리를 지원
 - ▶ 해외로부터의 국민가처분소득 확대와 경상흑자의 안정적 구조를 확보
 - 신외환법(1998)을 통해 외환거래 완전자유화와 금융빅뱅을 도모한 일본사례 참고
- ▶▶ 자본유출입 양방향에 대해 자금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여 개방경제하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



감사합니다.